

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07-416호(2007.11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, 경기도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.)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288호(2020.07.1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289호(2018.07.0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9-1668호(2019.12.05.),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제2020-1886호(2020.12.24.), 제2022-365호(2022.10.07.)로 고시된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 변경) 인가하고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04. 19.

남 양 주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명 칭 :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
가.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-5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41,968.0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
가. 명 칭 :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062-18 강변스포렉스빌딩 308호

다. 대 표 자 :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현민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정정)

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(변경)

: 최초 2018.06.28. / 변경 2024.04.17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(변경 없음)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용도	세대수	비고
도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	30,926	26.11	241.97	65.3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908세대	12개동, 지하2층~지상22층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 없음)

: 공동주택(아파트) 12개동, 908세대(임대주택 38세대 포함)

구분(주택)		전용면적(㎡)	공급면적(㎡)	세대수	구성비(%)
임대	전용면적50㎡미만	39.9961㎡	53.8155㎡	38세대	4.19
분양	전용면적60㎡미만	39.9961㎡	53.8155㎡	43세대	4.735
		45.9745㎡	62.0782㎡	168세대	18.50
		45.8853㎡	62.6373㎡	53세대	5.84
		59.9915㎡	80.5049㎡	329세대	36.23
		59.8323㎡	81.1370㎡	16세대	1.76
	전용면적 60㎡이상~85㎡이하	75.9542㎡	101.1207㎡	43세대	4.735
		75.9178㎡	102.6854㎡	89세대	9.80
		84.7927㎡	112.6792㎡	129세대	14.21
합계				908세대	100.00

9.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가.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: 사업시행자 설치 후 남양주시로 무상귀속(변경 없음)

구 분	규 모					위 치	
	등 급	류 별	폭원(m)	연장(m)	면 적(㎡)	기 점	종 점
합 계					11,042.0		
도 로	소 계				5,792.0		
	소로	3-15	6	452 (49)	298.0	중로 3-314	배수장
	중로	3-314	12	403	5,356.0	중로 2-2	중로 3-8
	소로	2-24	8	186(18)	138.0	중로 3-314	덕소리 산49
하 천	소 계				3,272.0		
	소하천		15 - 21	440	3,272.0	도곡리 947-9	도곡리 1033-4
경 관 녹 지	소 계				1,978.0		
	2003				1,590.0	도곡리 1027-14 일원	
	2005				388.0	도곡리 917-16 일원	

주1) 도로 연장 중 ()안의 연장은 도곡2구역 재정비촉진구역(재개발정비사업 구역) 내 편입된 연장임.

주2) 하천 면적 중 ()안의 면적은 도로와 중복 결정된 해당 시설의 면적임.

주3) 상기 정비기반시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별도 진행.

나.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·공유지 내역(변경 없음)

10. 관계도서 열람방법(변경 없음)

: 관계도서(지형도면 포함)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(☎ 031-590-2386) 및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31-576-323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.